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기관추천 특별공급 정정 안내문 [1/5]

※ 본 안내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작성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와 상이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하니 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개요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5-8번지 일원(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C1BL)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 ~ 지상29층, 16개동, 총 1,4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단위: m², 세대)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총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배정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01	59.9913A	59A	59.9913	23.2075	83.1988	37.4405	120.6393	198	10
02	59.9949B	59B	59.9949	23.5799	83.5748	37.4427	121.0175	58	5
03	84.9742A	84A	84.9742	24.4471	109.4213	53.0322	162.4535	559	30
04	84.9884B	84B	84.9884	25.7704	110.7588	53.0411	163.7999	297	15
05	84.9932C	84C	84.9932	25.5973	110.5905	53.0441	163.6346	59	5
06	109.9608	109	109.9608	26.1324	136.0932	68.6264	204.7196	240	-
07	136.6657	136	136.6657	38.0772	174.7429	85.2929	260.0358	5	-
계								1,416	65

분양가 및 분양조건

■ **분양가 및 분양조건**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주택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상	(예비)	대상	(예비)	대상	(예비)	대상	(예비)	대상	(예비)	대상	(예비)	대상	(예비)	대상	(예비)		
59A	2	(10)	2	(10)	2	(10)	2	(10)	2	(10)	1	(5)	1	(5)	-	-		
59B	1	(5)	1	(5)	1	(5)	1	(5)	1	(5)	-	-	-	-	1	(5)		
84A	6	(30)	6	(30)	6	(30)	6	(30)	6	(30)	4	(20)	1	(5)	1	(5)		
84B	3	(15)	3	(15)	3	(15)	3	(15)	3	(15)	1	(5)	1	(5)	1	(5)		
84C	1	(5)	1	(5)	1	(5)	1	(5)	1	(5)	1	(5)	-	-	-	-		
109	-	-	-	-	-	-	-	-	-	-	-	-	-	-	-	-		
136	-	-	-	-	-	-	-	-	-	-	-	-	-	-	-	-		
계	13	(65)	13	(65)	13	(65)	13	(65)	13	(65)	7	(35)	3	(15)	3	(15)		

■ **당첨예정자** :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자로서 청약 신청으로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대상자** :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자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 ※ ()는 예비대상자 배정 세대수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정하고, 예비대상자 추천 시 별도의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분양일정(예정) ※ 분양일정은 예정으로 변동될 시 추후 재안내 드리겠습니다.

구분	당초 (2024.04.17.(수), 발송)	변경 (2024.05.02.(목), 발송)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4.05.16.(목)	2024.05.23.(목)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홈페이지 (https://www.prugio.com/hb/2024/tangjeong_c1) 분양문의 : 1551-1416 (10:00 ~ 17:00)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4.05.27.(월) ~ 2024.05.28.(화)	2024.06.03.(월) ~ 2024.06.04.(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09:00~17:30) 분양사무소 방문접수(10:00~14:00까지 /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주민 가능)
당첨자 발표	2024.06.05.(수)	2024.06.13.(목)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준비사항

- 청약저축/청약부금 ▶ 청약예금 전환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 (변경 후 청약저축으로 재변경 불가)
- 청약예금 주택규모 변경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 (전용85㎡초과 청약예정 시, 해당 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총족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총족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총족 - 청약접수일까지 총족 (전입 등의 사유 시)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기관추천 특별공급 정정 안내문 [2/5]

특별공급 공급자격요건

구분	내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봅니다. (1회 특별공급 간수)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 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p>※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 선정 제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무주택세대구성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30%;">가. 주택공급신청자</td> <td></td> </tr> <tr> <td>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td> <td></td> </tr> <tr> <td>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td> <td></td> </tr> <tr> <td>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td> <td></td> </tr> <tr> <td>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td> <td></td> </tr> <tr> <td style="padding-left: 20px;">-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td> <td></td> </tr> </tbody> </table>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입주자 저축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전용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에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p>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에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에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기관추천 특별공급 정정 안내문 [3/5]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신청 자격		
자격요건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아래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국가 유공자 등 및 장애인 제외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청약홈 www.applyhome.co.kr)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천 기관부서	구분	해당기관
국가 유공자 등		충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041-589-4977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02-2225-6387
중소기업 근로자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041-415-0608
장애인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041-635-4273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042-270-4784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044-300-3855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비고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기관추천 특별공급 정정 안내문 [4/5]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구분	비고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청약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청약 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청약신청 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공포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사무실 (☎1551-14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안내

견본주택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90 (배방읍 장재리 1628)
분양 문의	1551-1416 (10:00 ~17:00)
홈페이지	https://www.prugio.com/hb/2024/tangjeong_c1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기관추천 특별공급 정정 안내문 [5/5]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 위치도



어디로든 빠른 쾌속 교통망



서울, 수도권 등을 빠르게 잇는 천안아산역 (KTX · SRT), 탕정역, 아산천안고속도로, 이순신대로, 한내로 등 편리한 교통환경

출퇴근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 아산탕정테크노일반 산업단지 등 단지 가까이 누리는 도보거리의 직주근접 프리미엄

안심교육과 편리한 생활 인프라



단지 옆 아산갈산중(예정) 및 미래초교, 지중해마을, 탕정과 천안 불당을 모두 누리는 더블생활권

쾌적함으로 가득한 힐링 라이프



아산 물환경센터 체육공원, 곡교천 아산 생태하천 조성 사업, 온생근린공원, 야생화정원 등 도보거리의 쾌적한 자연환경

※ 본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